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회계론적 평가

김 광 윤 ·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본 연구는 IMF체제 2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정부가 채택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을 회계론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시도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적 고찰과 함께 회계·세무담당자(기업임직원, 공무원, 회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도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회계개혁을 4개 부문으로 나눌 때 총괄적으로 회계촉진제도 개혁부문에서는 결합채무제표와 지분법 적용 의무화의 구조조정 촉진효과가 크게 기대되었으며, 회계보고(공시)제도부문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강화, 회계감사제도 개혁부문에서는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그리고 기타관련제도 개혁부문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가 각각 구조조정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었다. 둘째, 직종별 차이 분석에서는 항목별로 다르기는 했으나 대체로 제정기관 공무원 등과 회계전문가가 기대효과를 크게 보는 반면 기업임직원은 낮게 보았는데 특기할 사실은 자신에게 영향 미치는 것, 예컨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의무화의 경우 회계전문가는 낮게 본 반면 기업임직원은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 회계·세무 경력기간의 장단에 따른 차이는 직접적인 3개 회계제도보다 기타 관련 제도의 개혁이 더 큰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면서 장기경력자가 단기경력자보다 기대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조조정업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대체로 없었으나 차이가 있는 3개항목(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등)에서는 서로 엇갈린 인식을 보였다. 다섯째, 구조조정촉진제도 중 합병·분할회계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서는 ①회계기준상 「부의 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상치문제 ②지분통합법의 존폐문제 ③합병시의 기업가치평가기준문제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회계기준에 따르는 방안이 이구동성의 지지를 받았으나 ②, ③항에 대해서는 인식차이가 있었다.

〈주제어〉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지원회계, 합병, 분할

*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본 연구와 관련하여 2인의 익명심사자 그리고 광범위한 설문에 성실히 답해주신 응답자들과 자료처리에 수고 많은 안광열·김정우·한민수 조교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I. 序 論

우리 나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IMF관리체제를 맞고 있다. 1996년 12월의 OECD가입으로 선진국의 일원이 된 대한민국은 그후 1년도 채 못되어 1997년 11월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종래 재벌중심의 한국경제는 정부의 고성장정책아래 세습된 소유경영자의 결단력 있는 집중투자로 위험분산 및 강한 추진력의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안정성장 및 글로벌 시대에 들어와서는 달라져야 할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대 정권에 걸쳐 계속되어온 정경유착, 관치금융, 차입경영, 기술력부족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 오도된 선진국민으로서 들뜬 소비심리, 그리고 이들을 슬기롭게 관리하지 못한 정부관료들의 능력부재 등의 노정으로 국가부도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출범 직전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월 13일 경제개혁을 하기로 하고 대통령 당선자와 4대 재벌그룹회장(2월 6일 30대그룹회장)간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합의사항을 도출하였다.

즉, 경영투명성제고, 재무구조개선, 상호지급보증해소, 핵심역량집중, 지배주주책임강화의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추진하기로 하였다.¹⁾ 또, 동년 6월 18일 부실기업 55개사(5대그룹 20개사, 6-64대그룹 32개사, 비계열기업 3개사)를 퇴출시키고 6월 29일 부실은행 5개사(동화, 동남, 경기, 대동, 충청)를 퇴출하였다(전경련, 1999). 동년 7월 4일 대통령주재 정·재계 간담회에서 대기업간 빅딜의 자율적 추진,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 9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정부는 4차에 걸친 정·재계 간담회와 동년 11월 5일 정·재계·금융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독려하였다. 물론 정부는 합의사항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1998년 및 1999년에 걸쳐 수차례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통해 구조조정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시행해왔다.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제기된 주장을 보면 한국 경제의 개혁은 재벌 개혁에 있고 그 핵심은 재벌체제의 해체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김대환·김균, 1999, p.28),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 재벌의 해체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hanna and Palepu, 1999, p.126).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행 후 2년을 경과한 시점에 즈음하여 본 연구는 현행 구조조정관련 회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점검

1) 그 뒤 1999년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 상속·증여의 방지 등 3개 과제가 추가되었다.

과 개선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 둘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회계적 측면에서 내용검토한 후,
- 셋째, 위 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구조조정회계에 관한 포괄적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없고, 다만 합병·분할 등의 개별 연구는 단편적으로 다수 있다. 이중희(1995), 황인태(1996), 마영민(1999) 등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관련항목의 다양성 때문에 개별적인 선행연구에 대하여는 깊이 언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서적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archival study)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조조정업무에 대한 실증연구(empirical study)도 진행하였다. 다만 실증연구에 있어서는 98-99년에 걸친 구조조정회계제도의 적용결과가 기간이 짧아 금액·건수 등으로 통계 자료화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실무자에 대한 인식도 조사로 갈음하였다.

연구의 범위로서는 구조조정촉진제도 중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정리해고요건완화 등 상법·노동법 관련 부분은 제외하고, 회계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회계측정관련제도, 회계보고(공시)관련제도, 회계감사관련제도 그리고 기타 간접적 제도를 고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은 구조조정의 개념적 고찰, 구조조정관련 회계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분석, 구조조정관련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며 마지막으로 요약 및 연구한계를 기술하는 순서로 하였다.

Ⅱ. 구조조정의 개념적 고찰

1. 구조조정의 의의와 원인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학자에 따라 구조조정을 기업재편으로 부르면서 그 범위는 협의로 기업분할(sell-off)만을 의미하고 광의로 기업분할과 M&A를 포괄한다(선우석호,

1997,p.15 : Gaughan, 1996,p.10). 구조조정을 대상별로 볼 때는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조정이란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의 각 부문에 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며(강효석 외, 1999, p.1), 기업·기업집단 또는 소유주가 경제 및 산업요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조직변경, 사업조정,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노력(장태평, 1998, p.3)이라고 정의된다.

한편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기업의 합병·인수 또는 사업양도·양수로 인하여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이 되는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을 명시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요컨대 본고에서 구조조정이란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일체의 작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인사·생산·판매 등은 물론 부채와 자본의 조달 및 운용방식, 계열사 정리까지 포함된다. 이것은 단순한 다운사이징(downsizing), 즉 조직축소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Bethel과 Liebeskind(1993)는 1980년대 미국의 구조조정 붐을 예로 들어 대리인이론과 환경이론적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에 따를 때 경영자는 그들의 개인적 부가 기업의 성과보다는 기업의 규모나 파산위험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는 유인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 미국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영자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과대팽창과 과도한 다각화를 주주들의 압력과 M&A위협 때문에 반대로 수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환경이론(environmental theory)적 설명은 레이건 행정부의 반독점 입법의 집행완화, 조세법의 개정, 외부자본시장의 혁신, 경쟁의 변화 등과 같은 기업환경의 주요한 변화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이 1980년대에 붐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국내외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경영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주의 압력이 없이도 사업범위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결론처럼 기업구조조정을 설명하는 대리인이론과 환경이론적 설명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절충론(eclectic theory)으로서 비로소 설명할 수 있다는

2)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주장이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비경영참가주주의 소유(nonmanagerial shareholder ownership)가 증가하였고 또 관세장벽을 낮춤에 따라 대외경쟁이 치열해진 경영환경이 함께 작용하여 구조조정분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증가된 주주행동주의와 IMF체제를 초래한 기업부실환경이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만든 현실과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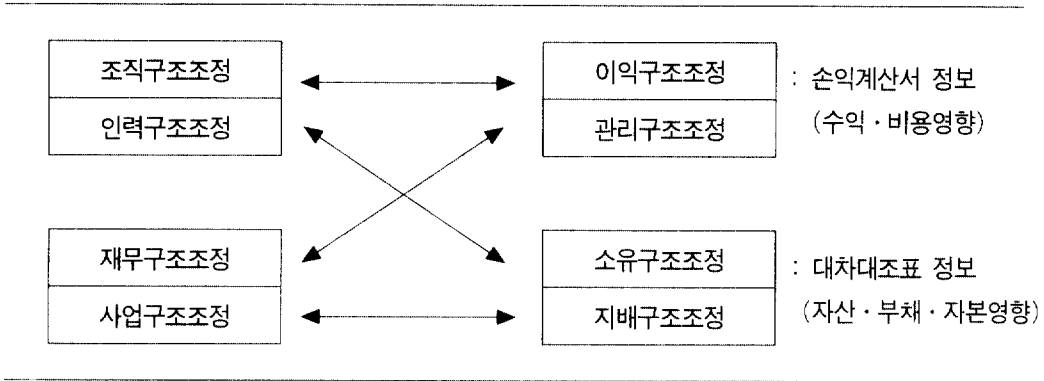
2. 구조조정의 유형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서 기업경영 전반을 조망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기업과 시장간의 교환관계이고, 둘째는 기업경영활동의 정보구조이다. 이중 후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정보로 표현된다. 따라서 기업과 시장, 기업경영의사결정과 필요정보간의 관계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아래의 8대분야로 정리될 수 있다. (강효석 외, 1999; 조동성, 1999)

구조조정분야	관련시장	관련 경영정보
① 조직구조조정	노동시장	손익계산서의 관리비정보
② 인력구조조정	노동시장	손익계산서의 인건비정보
③ 이익구조조정	제품시장/생산요소시장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정보
④ 관리구조조정	경영자시장/노동시장	손익계산서의 관리/인건비정보
⑤ 재무구조조정	자본시장/금융시장	대차대조표 대변정보
⑥ 사업구조조정	제품시장/경쟁사	대차대조표 차변정보
⑦ 소유구조조정	자본시장/기업소유권시장	대차대조표 대변정보
⑧ 지배구조조정	기업지배권시장/경영자시장	대차대조표 대변정보

이상 8개 구조조정을 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시장의 유사점과 기업관련 경영정보의 종류를 기준으로 대별하면 <그림 II-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그림 II-1〉 구조조정분야간의 상호연관성



전술한 강효석 외(1999)는 대차대조표 경영방식을 강조하면서 위 그림의 두 정보를 바꾸어 배열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IMF로부터 요구받아 발표된 정부의 조직개편중시의 대기업정책과 과세소득계산 위주의 세법편성내용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 정보를 먼저 배열하였다. 이들 8대 구조조정분야는 모두 기업경영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상호 밀접한 보완관계에 있으며, 논리적 선후 관계가 뚜렷하기보다는 경영개혁을 시도하는 기업의 주어진 현실과 여건에 따라 개혁의 시발점과 개혁추진상 강조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의 회계·세무상 문제를 다루는 본고에서는 합병·분할 등을 다루는 조직구조조정과 과다차입금으로 인한 부채비율 축소·기업개선작업(workout) 등을 다루는 재무구조조정, 그리고 기업교환(big deal)·사업전환 등을 다루는 사업구조조정의 3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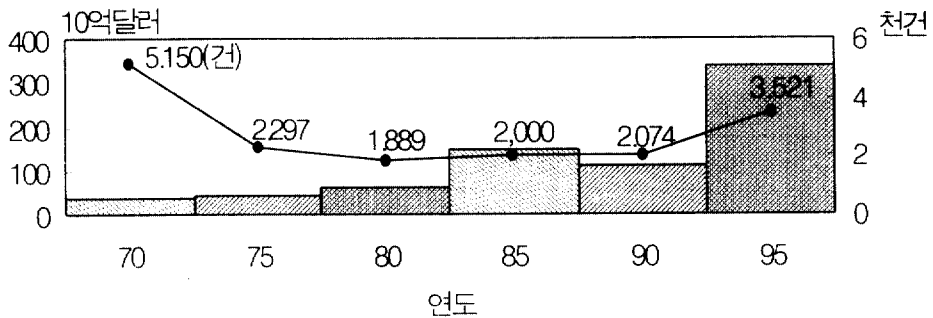
또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의 감독자 및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자체구조조정과 함께 증권투자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등 신금융시스템구축의 2분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3. 구조조정의 현황

이병기(1998)에 의하면 미국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구조조정, 인력구조조정(대규모고용감축), 조직구조의 재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업구조조정은 국내기업간의 인수합병(M&A)을 가속화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채산성이 없는 사업분야를 분리매각

(divestiture)하는 기업분할을 동반하였다. 매수합병의 경우 건수로는 70년대에 유행하다가 80년대에는 덜 활용되었으나 최근 다시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건당금액으로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II-2〉참조)

〈그림 II-2〉 미국기업의 M&A 동향 3)



〈자료〉 Merrill Lynch (1996)

일본의 경우에는 장기불황으로 외부경제환경에 대응력이 약한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가전,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그 유형을 보면 〈표 II-1〉과 같이 다각화·기업제휴·M&A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채산성 없는 기업의 시장퇴출과 핵심사업의 강화, 그룹력의 강화 등도 구조조정방안으로 이용되었다.

〈표 II-1〉 일본기업의 구조조정 이용사례 (총84사)

유 형	기업수	비율	유 형	기업수	비율
핵심사업의 강화	23	26.7	그룹력의 강화	20	23.3
다각화·기업제휴·M&A	41	47.7	시장의 전환	15	17.4
채산성없는 기업의 퇴출	39	45.3	인사조직의 활성화	14	16.3
계열회사의 재편·집약화	8	9.3	부실자산정리·재무체질강화	14	16.3
판매력강화·판매망재편	16	18.6	자산의 유효활용	20	23.3

〈자료〉 大和總研(編), 1998, -이병기(1998) p.236에서 재인용

3) Merrill Lynch, "Business Brokerage and Valuation", Mergerstat Review(1996) 을 Gaughan(1996)에서 재인용하여 필자가 그래프로 작성함.

한편 입수가 가능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통계로서 기업결합의 이용사례⁴⁾는 다음 <표 II-2>과 같이 M&A(주식취득 및 합병)가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으로 회사신설(자회사설립)·영업양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3자기업보다는 계열사간 결합이 94-98누계로 41.1%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유통업, 정보통신, 방송업 및 운수업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기업분할은 1998년부터 제도화되어 구조조정목적으로 1년동안에 366개나 쏟아져 나왔다.

<표 II-2>한국 기업결합 및 분할의 이용사례

		94년	%	95년	%	96년	%	97년	%	98년	%
기업결합	회사신설	55	(28.2)	121	(37.2)	130	(33.1)	163	(39.0)	130	(26.7)
	주식취득	77	(39.5)	142	(43.7)	159	(40.5)	130	(31.1)	92	(18.9)
	합병	48	(24.6)	48	(14.8)	63	(16.0)	75	(17.9)	151	(31.1)
	임원겸임	2	(1.0)	4	(1.2)	16	(4.0)	27	(6.5)	32	(6.6)
	영업양수	13	(6.7)	10	(3.1)	25	(6.4)	23	(5.5)	81	(16.7)
	계	195	(100)	325	(100)	393	(100)	418	(100)	486	(100)
기업분할										366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 연도와 Homepage(1999.10.)

Ⅲ. 구조조정관련 회계제도개혁의 내용검토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및 1999년에 도입한 회계제도개혁 내용은 크게 회계충정제도, 회계보고(공시)제도, 회계감사제도 그리고 기타관련 제도의 넷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⁵⁾

4) 구조조정에 적합한 현황자료 부족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에 따라 계열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이 1천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행하는 기업결합신고자료 및 최근 Homepage(www.ftc.go.kr)를 대신 인용하였음.

5)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을 광의로 정의하였으므로 조직·재무·사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실보고차원에서 모든 회계제도의 개혁을 포함하였다.

1. 회계측정제도

(1) 채권·채무 재조정회계의 도입

채무자의 신용하락 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어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채권자측) 또는 채무면제이익(채무자측)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기업회계기준 § 67, 1998.12.11;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5-67, 1999.9.14)⁶⁾

(2)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종래 환율변동으로 인한 장기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환율조정차(이연자산) 또는 환율조정대(이연부채)로 처리해 왔으나 이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기 손익(외화환산손실은 영업외비용, 외화환산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다.(기준 § 68③, 1998.12.11)

(3) 지분법 적용 의무화

종래 투자자산 중 소유비율이 20%이상인 투자주식의 평가를 시가법 또는 지분법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투자주식평가의 실질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기준에서는 소유비율 20%이상을 포함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반드시 지분법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하였다.(기준 § 59③, 해석42-59, 1999.6.29)

(4)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종래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에 반영해온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기손익의 의도적인 조작 방지를 위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기준 § 77 i, 1998.12.11개정)

6) 이하 본고에서는 축약하여 '기준' 또는 '해석'으로 각각 쓴다.

(5) 현재가치평가대상의 확대

종래 현재가치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에 대하여 취득시는 물론 상환기간·이자율 등 조건의 변경시에도 현재가치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경제적·실질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도록 개정하였다.(기준 § 66①, 해석 25-66, 1999.6.29개정)

(6)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종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연결재무제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30대 재벌에 대하여 실질지배력기준에 의하여 새로 기업집단 내 모든 회사를 포괄하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계열내 기업간의 상호출자, 지급보증 등 관련 정보의 공시로 부당내부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도록 하고, 동시에 당기순이익 및 외형(매출액) 부풀리기, 계열 기업간에 이루어진 이중 계산분이 제거되어 실질적인 재무상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기준 § 6②, 준칙-1998.10.21제정, 1999.12.22개정)

(7) 재평가회계의 폐지 법제화

종래 인정되어오던 자산재평가회계가 관련 법률의 폐지확정(2000년12월31일부)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중 자산평가원칙에서 삭제되고 부칙의 경과조치로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취득원가주의로 회귀함으로써 비교가능성제고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이다.

(8) 재무회계개념체계보고서 제정

회계요소인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정의와 측정기준에 대한 개념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미국의 SFAC처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1999.12.21 회계기준심의회 제정)

(9) 인수·합병 등의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종래의 합병회계준칙을 확대보완하여 M&A를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회계처리를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기업결합과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

정하였다.(1999.3.24)

(1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해석

세계화된 금융시장 개방에 부응하여 종래 개괄적이던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활동(hedging activities)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련 주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기준 § 70, 해석53-70, 1999.6.29제정)

(11) 기업분할의 회계처리해석의 제정

1998년 12월의 개정상법에서 구조조정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기업분할제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단순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관련 주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해석49-55, 1999.6.29)

(12)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

시설대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리스거래(임대차 및 렌탈거래포함)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금융리스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였다.

(13) 연구비의 당기비용화

종래 이연자산의 하나로 「연구개발비」라는 과목으로 자산처리해 왔던 연구비를 개발비와 분리하여 전자는 자산성을 부인하고 당기비용(판매관리비)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기준 § 43, 해석44-20, 1999.6.29)

(14) 회계원칙(기준)변경의 소급처리

종래 회계변경은 모두 전진법에 의해 그 효과를 미래처리(prospectively)해 왔으나 회계변경 중 회계원칙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소급법에 의해 과거처리(retroactively)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개정되었다.(기준 § 73 ②, 해석48-73, 1999. 6.29)

(15) 금융업회계처리준칙의 제·개정

종래 금융업(은행·증권·보험·증권투자·신탁·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은 각각 감독기관별로 각 결산지침에 따라 연도별 손익인정기준이 달라 대손충당금등 처리에 있어 '고무줄 잣대'라고 비난받아왔는데 이를 회계전문기관(증권감독원 회계감독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계처리준칙을 정하도록 하였다.(기준 § 90, 준칙 1999.12.8 개정)

2. 회계보고(공시)제도

(1)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의 제정

종래 회계기준의 본문에는 언급이 없이 보충적 주식사항의 하나로만 열거되어 있던 사업부문별 정보(segmental information)에 대하여 사업별·지역별로 세부사항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준 § 87 x vii, 해석 50-87, 1999.6.29)

(2) 분기재무제표의 도입

회계공시주기를 종래의 연간·반기별 회계공시체제에서 3개월 단위로 분기별(quarterly) 회계보고서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1999.6.23 개정)

(3) 전자공시체제의 구축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기업정보의 접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즉시공시를 하도록 감사종료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자공시하도록 하였다.(증권거래법 § 194의2,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1999.2.26)

(4) 중단사업부문의 정보공시해석의 제정

종래 회계기준의 본문에는 언급이 없이 보충적 주식사항의 하나로만 열거되어 있던 중단된 사업부문(discontinued operation)를 영업손익과 처분손익으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하였다.(기준 § 87 x viii, 해석 50-87, 1999.6.29)

(5)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

종래의 관계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를 포괄하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명칭과 매출·매입, 장단기 채권·채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내역, 담보 및 보증의 내용 등으로 공시범위를 넓혔다.(기준 § 87iii, 1998.12.11)

3. 회계감사제도

(1)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상장법인과 대규모집단소속기업에 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시 종래에는 당해 회사의 경영진이 주도하였으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였다.(외부감사법, 1998.4 및 상법, 1999.12)

(2)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수의 25%(최소1인)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외감사의 선임도 권고하고있다.(유가증권시장규정, 1999.2.20)

(3)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최근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에 대하여 1인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였다.(증권거래법 § 191의12, 1999.2.1)

(4)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공동기금적립포함) 등 의무화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체형 등 엄격한 벌칙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기관투자자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하여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을 의무화하였다.(외부감사법 § 17⑥, 1998.4)

4. 기타관련제도

(1) 독립회계기준제정기구의 신설

진실되고 공정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산업보호정책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관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1998년 3월 긴급구성된 회계제도특별위원회(교수4인, 공인회계사4인 계8인)에서는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를 벤치마크한 민간기구의 구성을 제의하였다.⁷⁾

(2) 지주회사제도의 개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일변도로 운영해오던 지주회사제도를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혁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전제하에서 자회사투자비율 50%(주권상장법인은 30%)이상과 부채비율 100%이하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개방적으로 인가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였다.⁸⁾(공정거래법 § 8, § 8의2, 1998.9)

(3) 퇴출관련법률의 개정

구조조정관련 특별절차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퇴출 3법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회생가능한 기업과 회생불능한 기업을 구분하면서 각각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법률제1517호~1519호, 1998.2.24)

(4) 소수주주권의 강화

상장법인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특례제도를 강화하여 경영진이 소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을 하는 경우 대표소송제기요건을 완화(예, 대표소송권 1%→0.01%)하였다.(증권거래법 § 191의13, 1998.2)

7) 1999년 하반기에 회계기준제정을 위탁받는 민간기구로서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와 그 집행기관으로서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하였으며, 그 재정적 기반이 1999년 말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8) 이에 따라 이중과세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1999년 12월 개정세법에 반영되었다.(법인세법 § 18의2)

(5)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권(업무집행지시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주식소유비율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이사로 보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또 기획조정실, 비서실 등의 기업집단적 경영조정기구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기업의 경영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다.(상법 § 401의2, 1998.12.28)

IV. 구조조정관련 회계개혁에 대한 문제점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광의적 개념에서 볼 때 구조조정 관련 회계제도는 다양하다. 또 이것은 그 동안 우리 나라 회계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후진적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개선과제를 내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시 구조조정이라 하면 M&A와 회사분할이 손꼽히는 경영전략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의 회계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부의 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과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상치문제

개정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준칙(10항)에서는 미국의 APB Opinion No.20(기업결합) 및 IAS No.22(기업결합)를 반영하여 기업결합을 매수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할 때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차감표시하되 ①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과 ②기타의 부의 영업권으로 구분한다. 이중 전자는 매수계약서상 명시한 기간내에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하고, 후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나누어 환입하고 공정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일시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분할해석제3항) 이중 분할차익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이다.

상술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대차대조표상 무형자산에 차감표시되어 있는 부의 영업권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서 이를 상법에서는 합병차익(합병의 경우) 또는 분할차익(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으로 구분하면서 모두 자본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상법 § 459①iii 및 iii의2) 상처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아닌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법인세법 § 16①) 그 결과 기업실무에서는 복잡한 세무조정의 필요성까지 등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문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준칙(제4항 및 5항)에 의하면 기업결합을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하고 매수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공정가액기준의 매수법, 지분통합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장부가액기준의 지분통합법을 각각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결합참여회사 중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결합은 매수기업결합으로 보고 그러하지 않는 경우는 지분통합기업결합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①결합참여회사 중 주식발행회사가 결합을 위해 상대방 결합참여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90%이상과 교환하여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발행하고, ②결합참여회사간 순자산의 공정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으며 ③각 결합참여회사 주주들간의 결합전 상대적 의결권 또는 지분율이 결합으로 인해 변동되지 않을 것 등의 3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기업결합은 매수회사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으로 보고 지분통합법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컨대 개정된 회계기준하에서도 기업결합에 대하여 매수법 외에 지분통합법을 존치하고 있으며 다만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러한 입장은 분할합병회계에서도 그대로 준용되어 합병회사가 인수한 자산·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반대로 합병회사가 인수한 자산·부채를 지분통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장부가액으로 인계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분할합병에관한회계처리해석 제4항)

한편 세법에서는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혜택을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법인세법 § 45①)

그러나 최근 미국 FASB는 공개초안에서 M&A를 일상적인 매매거래로 보고 회계처리시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로 간주하여 합병차익을 자본잉여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도 인수당시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매수법에 따르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지분통합법은 배제하도록 권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3.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평가기준문제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①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출하며 ②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위 ①의 가액과 자산가치(장부가액기준) 중 소액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와 상대가치(유사상장법인의 순자산, 경상이익 등을 고려하여 30%이상 할인)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증권거래법시행령 § 84의7 및 동시행규칙 § 36의12)

한편 세법에서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법인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종가평균(1999년 이전에는 평가기준일전 3월간의 종가평균이었음),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제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시가기준) 중 높은 금액(1999년 이전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산술평균이었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54)

이외에도 기업회계기준과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준칙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부채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기준 § 55② 및 준칙8항). 요컨대 기업간의 합병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가치평가기준이 규정마다 상이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는데 규정을 단일화하여 상호 준용하도록 하든지 각 규정의 제정취지에 따라 병존시키는 경우 구조조정촉진차원에서 기업이 이들 중 선택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9) FASB, FASB Viewpoints, "Why Eliminate the Pooling Method?" Status Report No.316, Aug 31, 1999.

V. 구조조정관련 회계개혁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설계

(1) 가설설정 및 변수선택

우선 각 회계개혁방안의 총괄적인 구조조정촉진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채권·채무재조정회계의 도입 등 총 29개 방안(회계측정관련제도 15개, 회계보고관련제도 5개, 회계감사관련제도 4개, 기타간접제도 5개)이 기업구조조정에 미치는 효과를 7점의 서열척도로 고찰하기로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관련 회계개혁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표본의 특성(직종·회계경력기간·구조조정업무경험)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제도를 입안 및 시행하는 공무원·금감원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과 실제 이용하는 기업임직원(이하 '기업임직원')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를 조언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회계전문가(이하 '회계전문가')사이에는 직종별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표본의 회계·세무경력기간의 장단별(단순히 직위보다는 회계·세무담당기간에 따라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로 3구분) 및 구조조정업무경험(종사·자문포함)유무별로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I〉 각 회계개혁방안의 구조조정촉진효과에 대한 인식이 직종간에 차이 있다.

〈연구가설 II〉 각 회계개혁방안의 구조조정촉진효과에 대한 인식이 회계·세무경력기간에 따라 차이 있다.

〈연구가설 III〉 각 회계개혁방안의 구조조정촉진효과에 대한 인식이 구조조정업무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 있다.

위 가설들에 대한 검증은 대립가설의 형태를 고려하여 양측검정(two-tailed test)하였다.

더 나아가 실무계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합병·분할제도와 관련하여 구체적 방안으로서

- ① 회계기준(기업인수·합병등회계준칙과 분할회계처리해석 포함)상 「부의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간의 차이점 해소방안문제
- ②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존치여부문제
- ③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평가기준문제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2) 표본의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설문 조사할 대상표본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① 1999년 7월 31일 현재 상장기업의 회계담당 임직원
- ② 비상장금융기관(제2금융권·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포함)의 회계담당 임직원
- ③ 재정경제부(세제실·증권국) 및 국세청 공무원
- ④ 금융감독원 임직원
- ⑤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 ⑥ 회계담당교수

위 대상표본에 대하여 ①,②는 리스트 전체(1사1인)를 설문대상으로 하였으며 ③~⑥은 임의 추출하여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우송 또는 방문 배부하였다. 이때 표본리스트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등의 회원명부를 근거로 하였으며, 자료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표 V-1〉조사표본의 상황

구 분		발송표본수	회수표본수	회수비율(%)	대상표본
직종	기업임직원	800	62	7.8	①+②
	공무원 등	300	63	21.0	③+④
	회계전문가	600	261	43.5	⑤+⑥
계		1,700	386	22.7	

〈표 V-1〉에 의하면 조사표본의 회수율은 기업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전문가 전체로 22.7%이었으며, 조사표본 386명의 성격을 본 연구의 목적상 회계·세무경력기간과 구조조정업무경험의 두 측면에서 다시 분류하면 〈표 V-2〉와 같다.

〈표 V-2〉조사표본의 성격

구 분		응답수	구성비(%)
회계·세무 경력	5년이하	71	18.4
	5-10년	100	25.9
	10년초과	215	55.7
구 조 조 정 업 무	경험있다	203	52.6
	경험없다	180	46.6
	무응답	3	0.8
계		386	100.0

(3) 조사내용과 조사시기

본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구 분			항목수	측정척도
I. 직접적 회계제도	회계측정제도	· 채권·채무재조정 ·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 지분법적용의무화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등	15	서열척도**
	회계보고(공시) 제도	·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 제정 · 분기채무재표의 도입 · 전자공시체제의 구축 등	5	서열척도**
	회계감사제도	·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4	서열척도**
II. 간접적 회계제도 -기타관련제도		· 독립회계기준제정기구의 신설 · 지주회사제도의 개방 · 퇴출관련법률의 개정 등	5	서열척도**
III. 각 문제점 및 대안				개방형
계			29	
IV. <합병 및 분할관련 구체적 방안>			3	명목척도
V. <인구통계적 사항>				
직종 회계·세무경력기간 구조조정업무경험	기업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전문가		3	명목척도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		3	명목척도
	경험있다, 경험없다		2	명목척도
계			8	

*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설문지 참조

** 서열척도는 Likert 7점척도를 이용함

조사시기는 1999년 8월 30일부터 1999년 9월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였다.

위 조사내용중 특히 I 과 II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조정회계제도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표본을 상대로 관련 조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표 V-3참조〉

〈표 V-3〉 구조조정회계제도 이용실태

(25개사)

항 목		기업수	채택비율(%)
회계 측정 제도	채권·채무재조정회계도입	16	64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22	88
	지분법 적용 의무화	20	80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잉여금 반영	21	84
	현재가치평가 대상확대	19	76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	6	24
	재평가회계의 폐지 법제화	6	24
	재무회계개념체계보고서 제정	9	36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제정	4	16
	파생상품의 회계처리해석	10	40
	기업분할의 회계처리해석	1	4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	8	32
	연구비의 당기 비용화	12	48
	회계원칙변경의 소급처리	12	48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3	12
회계 보고 제도	사업부문별 정보 공시해석	9	36
	분기재무제표의 도입	7	28
	전자공시체제의 구축	14	56
	중단사업부문의 회계보고해석	1	4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	11	44
회계 감사 제도	외부감사인 선임방식 개선	18	72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17	68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13	52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의무화	7	28
기타 관련 제도	독립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	3	12
	퇴출관련 법률의 개정	3	12
	소수주주권의 강화	7	28
	지배주주의 책임 명문화	5	20

〈표 V-3〉은 기업임직원 표본에 한정하여 구조조정회계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로서 총 응답수 62개사중 25개사(40.3%)의 경험치이다. 수단별로는 외화환산손익, 전기오류수정손익, 지분법 적용 등의 순으로 이용사례가 많았다.

2. 항목별 인식도 및 의견분석

설문지의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alpha¹⁰⁾는 0.9539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하였다.

(1) 총괄 및 직종에 따른 인식

설문항목별로 직종별 응답자들의 인식도를 Likert 7점척도와 서열척도자료에 적용되는 비모수통계기법인 Kruskal-Wallis 검정법에 의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V-4〉회계측정제도 개혁의 구조조정효과

(7점척도)

항 목	전체평균	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 전문가	X2값	유의수준
채권·채무재조정회계도입	4.89	4.45	4.81	5.01	4.010	0.135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5.19	5.18	5.16	5.20	0.240	0.887
지분법 적용 의무화	5.23	4.94	5.16	5.31	1.922	0.38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잉여금 반영	4.32	4.44	4.79	4.18	6.156	0.046*
현재가치평가 대상 확대	4.84	4.66	5.00	4.84	0.296	0.863
결합채무재표준칙의 제정	5.30	4.44	5.49	5.45	16.276	0.000**
재평가회계의 폐지 법제화	4.42	4.03	4.73	4.44	3.261	0.196
채무회계개념체계 보고서 제정	4.16	3.90	4.52	4.13	3.549	0.170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의 제정	4.78	4.26	5.11	4.83	8.534	0.014*
파생상품의 회계처리해석 제정	4.51	4.29	4.81	4.48	2.626	0.026
기업분할의 회계처리해석 제정	4.76	4.06	5.03	4.87	8.683	0.013*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	4.37	4.15	4.84	4.31	6.940	0.031*
연구비의 당기비용화	4.63	4.71	4.78	4.58	1.555	0.460
회계원칙변경의 소급처리	4.16	3.69	4.54	4.18	8.044	0.018*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5.03	4.66	4.94	5.14	3.588	0.166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 $\alpha=0.01$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4〉에 의하면 회계측정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결합채무재표준칙제정의 구조조정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분법 적용의 의무화,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

10) Spacer saver method에 의한 Hotelling상관분석으로 총 변수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별로는 결합재무제표준칙의 제정에 대하여 회계기준제정기관의 공무원 등과 회계전문가는 구조조정효과를 높게 기대하고 있는데 반해 기업임직원들은 낮게 보고 있었으며($\alpha=0.01$ 에서 유의적), 인수·합병 및 기업분할의 회계지침제정 그리고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원칙변경의 소급처리 등에 대하여도 같은 인식차이를 보이고 그 외는 인식차이가 없었다.

〈표 V-5〉회계보고(공시)제도 개혁의 구조조정효과

(7점척도)

항 목	전체 평균	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 전문가	X2값	유의 수준
사업부문별 정보공시 해석의 제정	4.76	4.24	5.08	4.80	8.744	0.013*
분기재무제표의 도입	4.52	3.76	4.65	4.67	13.226	0.001**
전자공시체제의 구축	4.55	4.18	4.84	4.57	4.134	0.127
중단사업부문의 회계보고해석의 제정	4.17	3.44	4.60	4.23	18.217	0.000**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	5.35	4.97	5.37	5.43	2.161	0.339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alpha=0.01$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5〉에 의하면 회계공시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가 구조조정촉진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의 제정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종별로는 분기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하여 회계전문가가 가장 기대가 큰 반면 기업임직원은 보통이하였고, 중단사업부문의 회계보고에 대하여는 기준제정기구의 공무원 등이 구조조정효과를 높게 본 반면에 기업임직원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에 대하여는 세 집단간 차이없이 모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표 V-6〉회계감사제도개혁의 구조조정효과

(7점척도)

항 목	전체 평균	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 전문가	X2값	유의수준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4.64	4.24	4.86	4.67	3.752	0.153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4.87	4.44	4.83	4.99	3.774	0.153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4.63	4.31	4.73	4.68	3.550	0.169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 등 의무화	4.62	5.02	4.73	4.51	6.370	0.041*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6〉에 의하면 회계감사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의 구조조정촉진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그 다음이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순이었다. 그리고 직종별로는 대체로 의견차이가 없었고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의무화가 구조조정촉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는 기업임직원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반대로 회계전문가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집단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표 V-7〉기타 관련제도 개혁의 구조조정 효과

(7점척도)

항 목	전체 평균	기업 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 전문가	X2값	유의수준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 신설	4.74	4.58	4.68	4.80	0.472	0.790
지주회사제도의 개방	4.73	3.90	4.79	4.91	23.234	0.000**
퇴출관련법의 개정	5.19	4.71	5.11	5.23	7.978	0.019*
소수주주권의 강화	5.34	5.21	5.17	5.42	1.114	0.573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	5.60	5.50	5.44	5.66	1.536	0.464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alpha=0.01$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7〉에 의하면 기타 관련제도 개혁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가 구조조정촉진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퇴출관련법의 개정의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았다. 그리고 직종별로는 지주회사제도의 개방과 퇴출관련법의 개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회계전문가는 구조조정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기업임직원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집단간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2) 회계·세무 경력기간에 따른 인식

〈표 V-8〉회계·세무 경력기간에 따른 집단별 인식차이

(7점척도)

	개 혁 내 용	전체 평균	5년 이하	5- 10년	10년 초과	X2값	유의수준
회 계 촉 진 제 도	채권·채무 재조정회계 도입	4.89	4.80	4.75	4.98	1.976	0.372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5.19	4.94	5.36	5.20	3.404	0.182
	지분법적용 의무화	5.23	5.28	5.49	5.08	5.335	0.069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이영금반영	4.32	4.44	4.32	4.28	0.205	0.903
	현재가치 평가대상확대	4.84	4.69	5.06	4.78	2.867	0.238
	결합재무제표 준칙의 제정	5.30	5.06	5.30	5.37	3.256	0.196
	재평가회계의 폐지법제화	4.42	4.73	4.72	4.18	7.977	0.019*
	재무회계개념 체계보고서 제정	4.16	3.83	4.01	4.33	9.273	0.010**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의 제정	4.78	4.51	4.63	4.94	8.457	0.015*
	파생상품의 회계처리해석 제정	4.51	4.37	4.50	4.55	1.273	0.529
	기업분할의 회계처리해석 제정	4.76	4.54	4.74	4.85	3.400	0.183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	4.37	4.23	4.37	4.41	1.938	0.379
	연구비의 당기비용화	4.63	4.45	4.64	4.69	1.407	0.495
회 계 보 고 (공 시) 제 도	회계원칙변경의 소급처리	4.16	4.17	4.08	4.19	0.134	0.935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의 제정	5.03	4.80	5.10	5.07	2.405	0.300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의 제정	4.76	4.59	4.70	4.84	2.079	0.354
	분기재무제표의 도입	4.52	4.31	4.48	4.61	2.441	0.395
	전자공시체제의 구축	4.55	4.58	4.53	4.55	0.027	0.986
회 계 감 사 제 도	중단사업부문의 회계보고해석의 제정	4.17	4.00	4.32	4.15	1.020	0.601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강화	5.35	5.37	5.43	5.30	1.069	0.586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	4.64	4.42	4.62	4.71	2.205	0.332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4.87	4.52	4.76	5.04	6.094	0.048*
기 타 관 련 제 도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4.63	4.24	4.54	4.80	7.488	0.024*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 등 의무화	4.62	4.76	4.61	4.59	0.806	0.668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 신설	4.74	4.73	4.71	4.76	0.320	0.852
	지주회사제도의 개방	4.73	4.38	4.81	4.80	4.290	0.117
	퇴출 관련법의 개정	5.19	5.01	5.12	5.29	2.390	0.303
	소수주주권의 강화	5.34	5.49	5.38	5.28	2.684	0.261
기 타 관 련 제 도	지배주주의 책임 명문화	5.60	5.58	5.68	5.57	0.295	0.863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alpha=0.01$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8〉에 의하면 회계·세무경력기간의 장단에 따른 각 회계개혁방안의 구조조정 촉진효과를 본 결과 직접적인 회계제도보다 기타 관련제도의 개혁(예, 지배주주의 책임 명문화, 소수주주권의 강화)이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집단별로는 경력이 가장 많은 10년초과자가 재무회계개념체계보고서의 제정, 인수합병회계준칙, 사외이사·감사의 확대, 상근감사제도에 큰 기대를 거는데 비하여 경력이 가장 짧은 5년이하자는 별 기대를 걸지 않아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기할 사실은 재평가회계의 폐지법

제화의 구조조정 촉진효과에 대하여는 오히려 경력이 적은 5년이하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반하여 경력이 가장 많은 10년초과자는 낮게 보는 인식차이가 있었다.

(3) 구조조정업무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

〈표 V-9〉 구조조정업무 경험유무에 따른 인식차이

(7점척도)

개혁내용	실제경험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수준	비고 (Levene의 등분산성검정)
지분법 적용 의무화	유경험자	5.38	1.51	2.015	0.045*	등분산 (F=1.339)
	무경험자	5.06	1.62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잉여금반영	유경험자	4.13	1.76	-2.173	0.030*	등분산 (F=0.341)
	무경험자	4.51	1.68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의 개선	유경험자	4.39	1.79	-3.206	0.001**	이분산 (F=4.911)
	무경험자	4.93	1.53			

* $\alpha=0.05$ 에서 유의적임

** $\alpha=0.01$ 에서 유의적임

(양측검정)

〈표 V-9〉에 의하면 구조조정업무경험의 유무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3개 제도 중에서도 외부감사인선임방식의 개선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잉여금 반영에 대하여 유경험자보다도 무경험자가 기대효과를 더 크게 하고 있었는데 이는 순수 이론적 관점으로 보이며, 지분법적용 의무화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구조조정촉진효과를 더 기대하는 인식차이를 보였다.

(4) 합병·분할의 구체적 회계처리 개선

가. 회계기준(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및 분할회계처리해석 포함)상 「부의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 규정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규정이 다른데 대한 회계처리 방향

문항	응답수	비율(%)	기업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전문가
①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처리	88	22.8	18	14	56
② 계기준에 따라 처리	212	54.9	21	37	154
③ 세법규정에 따라 처리	71	18.4	15	11	45
④ 기타	15	3.9	8	1	6
계	386	100.0	62	63	261

위 표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방향과 관련하여 「②회계기준에 따라 합병차익은 무형자산에서 차감하고, 분할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과반수가 지지하였는데 이 방안은 미국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입장과의 같은 것으로서 직종별로도 큰 이견이 없었다.

나.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

문 항	응답수	비율(%)	기업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전문가
① 실질이 지분통합인경우에만 지분통합법사용	104	26.9	15	20	69
②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선택 허용	96	24.9	19	22	55
③ 매수법만 인정하고 지분통합법 폐지	173	44.8	21	21	131
④ 기타	13	3.4	7	0	6
계	386	100.0	62	63	261

위 표에 의하면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③M&A가 일상화되었으므로 신뢰성제고를 위해 공정가액기준인 매수법만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는 제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②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양자택일 허용」을 많이 지지한데 비하여 다른 두 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인식차이를 보였다.

다.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의 평가기준

문 항	응답수	비율(%)	기업임직원	공무원 등	회계전문가
① 회계기준상의 자산·부채별 공정가액	180	46.6	24	23	133
② 증권거래법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87	22.5	14	12	61
③ 세법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69	17.9	14	25	30
④ 위 ①~③중 기업이 선택	31	8.0	3	2	26
⑤ 기 타	19	4.9	7	1	11
계	386	100.0	62	63	261

위 표에 의하면 합병비율의 결정근거로서 기업가치 평가기준에 관하여 「①회계기준상 자산·부채별 공정가액」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 다만 집단별로는 제정기관의 공무원 등은 「③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기준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었으나 다른 두 집단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인식차이를 보였다.

VI. 결 론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이슈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하여 회계론적 관점에서 이론적·실증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우선 이론적 고찰에서는 구조조정의 개념정의를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구조를 바꾸는 일체의 작업」으로 내리고, 여기에는 인사·생산·판매 등은 물론 부채·자본의 조달 및 운용방식, 계열사정리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구조조정의 유형을 알아본 뒤 구조조정회계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구조조정회계제도 중 합병·분할회계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기술하고 동시에 인식도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측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결합재무제표준칙 제정의 구조조정 촉진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분법적용의 의무화가 꼽혔다.

직종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기준 제정기관의 공무원등과 회계 전문가는 구조조정 효과를 높게 기대하고 있는 데 반해 기업임직원들은 낮게 보고 있었다..

둘째 회계보고(공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강화가 구조조정효과 면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 제정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인식차이에 있어서는 분기재무제표도입에 대하여 회계전문가가 가장 기대가 큰 반면 기업임직원은 낮았다.

셋째, 회계감사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가 구조조정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고 그 다음이 외부감사선임방식의 개선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 등 의무화를 구조조정효과측면에서 기업임직원이 가장 높게 기대하는 반면 회계전문가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고 있었다.

넷째, 기타관련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가 구조조정 촉진에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수주주권의 강화가 꼽혔다.

직종별로는 지주회사제도의 개방에 대하여 회계전문가는 큰 기대를 가졌으나 기업임직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회계·세무 경력기간의 장단에 따라 각 회계개혁방안의 구조조정촉진효과를 본 결과 직접적인 회계제도보다 기타 관련제도의 개혁(예,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이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집단별로는 경력이 가장 많은 10년 초과자가 인수·합병회계준칙에 큰 기대를 거는데 비하여 경력이 가장 짧은 5년 이하자는 별 기대를 보이지 않아 인식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구조조정업무경험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가 대체로 없었으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3개제도 중에서 외부감사인 선임방식의 개선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처리에 대하여는 무경험자가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한 반면 지분법적용 의무화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더 크게 기대하여 차이가 있었다.

일곱째, 구조조정촉진제도 중 합병·분할회계의 구체적 개선측면에서는 ① 회계기준상 「부의 영업권·주식발행초과금」 규정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 규정이 다른데 대한 회계처리방향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54.9%)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지지하였고 ② 지분통합법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가액 기준의 매수법만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하는 것을 지지했으나 직종별로는 다소 인식차이가 있었다. 또 ③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업가치의 평가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부채별 공정가액기준을 다수가 지지했으나 집단별로는 제정기관의 공무원등은 세법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기준을 지지하여 다른 두 집단과 인식차이를 보였다.

상기 분석결과 구조조정촉진방안 29개 항목에 대하여 4개 회계제도 그룹별로 기대효과에 중요성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합병·분할회계에 대하여는 상법·세법의 규정을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키고 지분통합법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과제인 구조조정회계제도에 관한 실적통계가 시행시기문제(1999년회계연도부터 적용)로 인해 집계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대안적 연구로서 행해진 설문조사의 회수율이 특히 기업임직원표본의 경우 주제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비교적 낮았다.

셋째, 특히 구조조정 회계제도의 수단별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반수가 안되는 40.3%만 신고하였는데 그 결과 무응답오류(non-response error)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효석·권석균·이원흠·조장연, 1999, 기업구조조정론 : 가치창조경영의 전략방안, 홍문사.
- 권기범, 1992, 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권석연·윤정현·최희식, 1997, 미·일 재역전이 주는 기업구조조정의 교훈, 신한종합연구소.
- 공정거래위원회, 1999, 공정거래백서 및 Homepage(<http://www.ftc.go.kr>)
- 금융감독위원회(증권감독원), 1998,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 김종창, 1999, 구조조정과 회계제도의 개혁,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심포지움, 「경제개혁과 회계의 역할」, pp.1-21.
- 김대환·김균 편, 1999,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 김경훈·박영근·강정식, 1999,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에 관한 연구, 1999동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한국경영학회, pp.97-106.
- 마영민, 1999, 기업분할에 관한 절차 및 유형별 회계·세무문제, 「안진의 창」, 안전회계법인, pp.36-56
- 문원영, 1990, M&A의 이론과 실제, 상지문화사.
- 선우석호, 1997, M&A: 기업합병·매수와 구조재편, 법문사.
- 유재규, 1999, 기업합병·합병분할 등에 관한 회계처리해설, 기업분할실무, 한국공인회계사회, pp.83-130.
- 윤순석·이원창·전성빈, 1999,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1999추계 공동심포지움, 한국회계학회와 한국증권학회, pp.7-42.
- 이병기, 1998, 외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pp. 225-282.
- 이중희, 1995,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분석적 고찰, 회계저널 제3호, 한국회계학회, pp.115-136.
- 이우택, 1992,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 _____, 1994, 기업합병관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 회계·세무상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구보고서 94-1.
- _____, 1999, 기업합병·분할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월간조세」, 통권 제132호, 조세통람사.

- 이재우, 1998, 기업구조조정정책, 한국경제연구원,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pp.15-88.
- 임재현, 1999, 기업분할에 관한 세법실무, 기업분할실무, 한국공인회계사회, pp.131-144.
- 장태평, 1998,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주)광교아카데미.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1999,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재벌개혁 후속조치방안.
- 전인우, 1998, 기업합병·매수 및 분할제도, 한국경제연구원, 「IMF 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 pp. 283-330.
- 조동성, 1999, 경제위기의 원인과 구조조정의 과제, 1999동계학술연구 발표회 논문집, 한국경영학회, pp.29-56.
- 지호준·박용원, 1998, M&A: 기업인수·합병, 법문사.
-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1999, 한국5대재벌백서, 1995-1997, 나남출판.
- 황순성, 1992,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세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 황인태, 1996, 기업특성이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1권 제4호, pp.177-2000.
- APB, 1970, Business Combinations, APB Opinion No.16.
- BenDaniel, David J. and Arthur H. Rosenbloom, 1998, International M&A, Joint Ventures, and Beyond :Doing the Deal, John Wiley & Sons, Inc.
- Bethel, J. and J. Liebeskind, 1993,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Corporate Restructur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4, pp. 15-31.
- FASB, 1999, FASB Viewpoints, "Why Eliminate the Pooling Method?" Status Report No.316, Aug 31.
- Gaughan, Patrick A., 1996, Mergers, Acquisition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John Wiley & Sons, Inc.
- Gilson, R. J., 1993, The Law and Finance of Corporate Acquisitions, University Casebook Series, Foundation Press.
- IASC, 1998, Business Combinations, IAS No.22, September.
- Khanna, T. and Krishna Palepu, 1999, The Right Way to Restructure Conglomerates in Emerging Market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pp.125-134.
- Scharf, Charles A. , Edward E. Shea and George C. Beck, 1991, Acquisitions, Mergers, Sales, Buyouts & Takeovers, 4th ed. Prentice-Hall.
- Weston, J. Fred, Kwang S. Chung, Juan A. Siu, 1998, Takeovers, Restructuring and Corporate Governance, 2nd ed., Prentice-Hall.

An Accounting Evalu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Alternatives*

Kwang-Yoon Kim

Professor, Business School, Ajou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corporate restructuring alternatives in respect of accounting policies. Research methodologies applied are theoretical and empirical ones via opinion survey of business officers,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among four reforms of accounting system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and mandated equity method had top restructuring effect in field of accounting measurement, and strengthened disclosure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field of accounting disclosure, and enlargement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in field of auditing, and specification of dominating shareholders' responsibility in field of other related systems, respectively.

Second, tests of difference in opinion by job type showed that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s had higher expectation of restructuring than business officers except the compulsory insurance against legal indemnity of accounting firms, in which business officers had higher expectation.

Third, tests of difference in opinion by career period showed that longer career people had higher expectation of restructuring than shorter ones.

Fourth, tests of difference in opinion by experience of restructuring practic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Fifth, as to specific aspects of merger and demerger, most subjects supported the compliance with the GAAP rather than the Commercial Code and Tax Law in dealing negative goodwill and demerger gain, pooling-of -interests, and valuation basis of M&A ratio.

<Key words> corporate restructuring, restructuring alternatives, merger, demerger.

* The author wishes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1998 research grant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계와 세무분야에서 개인·사회·국가의 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IMF 관리체제를 맞아 경제개혁의 차원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서 각종 제도적 방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제 :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회계와 세무론적 평가〉

국제적 수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세제가 되도록하기 위해서 귀하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에 따라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가급적 9월 7일까지 회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 8.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광윤(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구조조정 촉진효과 측면에서 아래 각 방안에 대한 의견을 V표로 제시바랍니다.

(1=전혀 효과없다, 4=보통이다, 7=매우 효과있다)

〈제1부〉 회계제도

회계기준·준칙·해석	의견표시(V)						
	1	2	3	4	5	6	7
1. 채권·채무 재조정 회계 도입							
2. 외화환산손익의 당기손익처리							
3. 지분법적용 의무화							
4.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이월이익잉여금 반영							
5. 현재가치평가 대상 확대							
6. 결합재무재표준칙 제정							
7. 재평가회계의 폐지 법제화							
8.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 개선							
9.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의 확대							
10. 상근감사제도의 도입							
11. 재무회계 개념체계보고서 제정(안)							
12.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 제정							
13. 파생상품의 회계처리해석							
14. 기업분할의 회계처리해석							
15. 사업부문별 정보공시해석							
16. 독립회계기준 제정기구 신설							
17. 회계법인에 손해배상보험가입의무화							
18. 분기재무제표의 도입							
19. 전자공시체제의 구축(안)							
20. 중단사업부문의 회계보고해석(안)							
21. 지주회사제도의 개방							
22. 퇴출3법(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의 개정							
23. 소수 주주권의 강화							
24. 지배주주의 책임명문화							
25. 리스회계처리준칙의 개정							
26. 연구비의 당기 비용화							
27. 회계원칙 변경의 소급처리							
28.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강화							
29. 금융업(은행·증권·보험·신탁 등)회계처리 준칙 제정							
〈문제점 및 대안〉 : 별지 기재가능							

〈제2부〉 합병·분할관련 구체적 방안

(번호위에 √표 바람)

I. 회계처리 개선

1. 기업회계기준 (인수·합병회계준칙 및 분할회계처리해석)상 「부의 영업권·주식발행 초과금」규정과 상법·세법상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규정이 다른데 회사의 회계처리는?

- ① 상법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는 기본법인 상법(자본준비금상 합병차익·분할차익)에 따라야 한다.(세무조정 불필요)
- ② 미국등 국제회계기준을 따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합병차익은 무형자산에서 차감하고, 분할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에 따라야 한다. (세무조정 필요함)
- ③ 합병·분할차익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한 세법규정을 따라야 한다.(세무조정불필요)
- ④ 기타의견()

2. 지분통합(pooling of interests)법의 회계처리는?

- ① 인수·합병거래의 실질이 지분통합(인격합일)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존치시킨다.
(분할회계에서도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치)
- ②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수법과 양자택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③ 미국 FASB의 최근 입장처럼 M&A가 일상화되었으므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가액기준인 매수법만 인정하고 지분통합법은 폐지해야 한다.
- ④ 기타의견()

3. 합병비율을 결정하기위한 기업가치평가기준은?

- ① 기업회계기준상 자산·부채별 공정가액으로 한다.
- ② 증권거래법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규정에 의한다.
- ③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와 순순익가치규정에 의한다.
- ④ 위 ①②③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다.
- ⑤ 기타의견()

〈일반사항〉

1. 귀하의 직종은?

- ① 기업임직원 ② 공무원(금감원임직원포함) ③ 전문직(대학교수포함)

2. 회계·세무 관련 경력은?

- ① 5년이하 ② 5~10년 ③ 10년초과

3. 구조조정업무에 대한 경험(자문포함)유무?

- ① 경험있다 ② 경험없다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